

출자·출연기관 종합감사

2023년도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문



경 상 남 도
(감사위원회)

목 차

I. 감사실시 개요	1
II. 감사대상기관 현황	3
III. 감사결과	4
1. 감사결과 총괄	4
2. 적극행정면책 처리 현황	4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4
1)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업무 부적정 ...	5
2) 진료비 감면위원회 운영 부적정	9
3) 직원 채용절차 준수 부적정	16
4) 관용차량 이용 부적정	27
5) 성희롱 피해자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처리 부적정	31
6) 물품구매 단가계약 체결 미이행	35

I.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2023년도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의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기관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관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이번 감사를 실시하였다.

2. 감사중점 및 대상

이번 감사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이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조직·인사 전반,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계약 및 집행, 기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주요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직원 채용실태 등 기관운영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3. 감사실시 과정

이번 감사는 2017년 7월에 시행한 종합감사 이후 코로나19 특수 상황으로 2년간 유예되었다가 5년 만의 첫 감사로 마산의료원의 보도 및 행정 전반의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하였고, 2023. 2. 2.부터 2. 8.까지 5일간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4.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과 관련하여 2023. 2. 8.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 마감회의를 실시하고, 업무 처리 경위, 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 등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감사 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하였다.

Ⅱ. 감사대상기관 현황

1. 일반 현황

- 설립현황 : 1983. 7. 1. 지방공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출범
- 위 치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31
- 설립목적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경상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의료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

2. 조직 및 인력

- 조 직 : 공공의료본부, 진료처, 관리부 등 34개 실과
- 인 력 : 정원 456명 / 현원 425명

3. 재정 현황

- 예 산 : 100,619백만 원
※ 2022년도 최종예산 기준
- 출 연 금 : 1,705백만 원(도비 100%)

4. 주요 사업

-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 전염병 및 주요 질병의 관리 및 예방사업
-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곤란한 보건의료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등

Ⅲ. 감사결과

1. 감사결과 총괄

감사결과 [표]와 같이 총 13건(본처분 6, 현지조치 7)의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통지하였고,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표] 감사결과 총괄

구분	행정상(건)					신분상(명)				재정상(천 원)				
	계	시정	주의	통보	경고	계	징계	경고	주의	계	회수	추징	감액	부과
계	14	2	11	1	0	3	0	11	0	589.7	589.7	0	0	0
처분요구	7	1	5	1	0	3	0	11	0	589.7	589.7	0	0	0
현지조치	7	1	6	0	0	0	0	0	0	0	0	0	0	0

※ 통보 1건은 주의 1건과 중복

2. 적극행정면책 처리현황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면책신청은 접수되지 않았다.

3.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명세 : 붙임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고·주의 요구

제 목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업무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이하 “마산의료원”이라 한다) ○○과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시설공사 및 장비구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감염병관리기관 지정 등)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지원¹⁾ 사업지침(이하 “사업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서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중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감염병전담병원²⁾으로 지정·운영 중인 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에서 지출했거나 지출예정인 시설·장비, 소모품 등 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비 지원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1) 사업근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66(2020.3.11.)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2) 감염병관리기관으로 기존 병상을 소개하여 중등도 정도의 환자를 전담하여 치료하는 병원

그리고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에 따르면 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마산의료원이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 받은 운영기간 동안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구입 장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지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2020. 2. 27.부터 2022. 5. 18.까지 2022. 7. 25.부터 2022. 10. 8.까지 마산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받고 운영된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4차례(2020. 3. 13. 1차, 2020. 10. 20. 2차, 2021. 5. 27. 4차, 2022. 5. 16. 8차)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 신청 안내 공문을 수신하였고 해당 기간 내 설치 및 구입한 시설·장비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비 지원 신청을 누락하여 마산의료원 재정에 손실을 초래하였으며,

[표]와 같이 위 기간 내 마산의료원이 설치 및 구입한 코로나19 관련 시설 및 장비 총 49건 212,275,554원 중 31건 147,886,000원은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 및 기타 국비 지원을 받아 비용을 처리한 반면, 18건 64,389,554원에 대하여는 지원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마산의료원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 현황

연번	일자	설치·구매 내용	금액 (단위 : 원)	재원	비고
계		49건	212,275,554		
1	'20. 1.30.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임대	1,122,000	국비	병원협회
2	'20. 2. 5.	신종코로나감염증 관련 현수막,안내판.배너작업	1,645,000	자비	
3	'20. 2.10.	코로나 관련 음압텐트 등 외부 전원공사	2,340,000	국비	병원협회
4	'20. 2.14.	코로나바이러스 선별진료소(임시컨테이너) 통신공사	594,000	국비	병원협회
5	'20. 2.28.	코로나19진료관련 수선비	510,400	자비	
6	'20. 3. 2.	코로나치료병실로운영하기위한PVC자바라 설치	4,620,000	국비	1차
7	'20. 3. 5.	코로나치료병실로운영하기위한PVC자바라 설치	7,788,000	국비	1차
8	'20. 3.11.	코로나치료병실로운영하기위한PVC자바라설치	231,000	자비	

9	'20. 3.20.	코로나19 관련 격리용 합성수지 거치대(40개) 구매	6,160,000	국비	1차
10	'20. 3.31.	코로나19진료관련 시설소모품(천막)	242,000	자비	
11	'20. 3.31.	코로나19진료관련 시설소모품(천막)	220,000	자비	
12	'20. 4.21.	코로나-19관련 41병동 CCTV설치	6,809,000	국비	2차
13	'20. 4.21.	코로나-19관련 양방향 워킹스루 부스 구매 설치	8,800,000	국비	기능보강사업
14	'20. 5. 4.	코로나-19관련 31병동 CCTV설치 및 복도 카메라 설치	8,921,000	국비	2차
15	'20. 6.10.	코로나-19관련 비대면 자동체온감지시스템 구매	3,700,000	국비	2차
16	'20. 6.19.	코로나-19 대응 출입관리 키오스크4대 구매	18,370,000	국비	2차
17	'20. 6.22.	코로나-19관련 음압채담부스(TBC-C) 구매	15,400,000	국비	기능보강사업
18	'20. 7.20.	코로나19확진자 진료한 의료진용 이동식사위부스설치	1,265,000	국비	2차
19	'20. 7.22.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천막 설치	689,700	국비	병원협회
20	'20. 7.24.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컨테이너 전기공사	450,000	국비	병원협회
21	'20. 7.24.	코로나-19 대응 훈증소독기(노코스프레이) 2대 구매	15,400,000	국비	2차
22	'20. 7.27.	코로나19관련 검사실 구획분리 자동문 설치공사	8,375,950	국비	2차
23	'20. 8. 7.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 보호복 탈의실 설치	462,000	국비	병원협회
24	'20. 8. 7.	51병동 추가격리병동 CCTV 설치	2,882,000	국비	2차
25	'20. 8.13.	코로나19 선별진료컨테이너 양방향 램프 설치	792,000	국비	병원협회
26	'20. 8.19.	코로나-19관련 장례식장 자동체온감지시스템 구매	3,000,000	자비	
27	'20. 8.20.	코로나19 선별 검사 컨테이너 캐노피 설치	4,420,000	국비	병원협회
28	'20. 9. 3.	41병동 녹화기 이전 및 42병동CCTV설치공사	8,217,000	국비	병원협회
29	'20.11.13.	코로나환자관련 31병동복도 출입통제용 출입문설치	1,760,000	국비	4차
30	'20.11.23.	코로나 환자 공간분리 pvc자바라 설치	689,700	국비	4차
31	'20.11.23.	코로나19확진자 진료한 의료진용 이동식사위부스설치	1,265,000	자비	
32	'20.11.25.	코로나환자진료의료진 탈의실 난방기 전원공사	880,000	자비	
33	'20.11.27.	코로나 선별진료소 앞 방풍벽 설치	2,050,000	국비	병원협회
34	'20.11.30.	코로나19 52,53병동 CCTV설치공사	8,019,000	국비	4차
35	'20.11.30.	코로나19 확진자 병상증설및음압기설치용 부자재	1,329,900	자비	
36	'20.12. 1.	코로나진료관련 52병동 복도 칸막이문 설치	1,937,650	국비	4차
37	'20.12. 1.	코로나확산방지를위한 52병동복도 PVC자바라 설치	231,000	국비	4차
38	'20.12. 2.	41병동CCTV장비 중환자실에서 공급실 불출실로 이전	1,474,000	국비	4차
39	'20.12.17.	코로나19 입원병상 8번공조기 인버터설치 공사	8,960,000	자비	
40	'21. 1.13.	코로나19전담의료진을위한 시설공조기(11호기)수리	10,837,750	자비	
41	'21. 1.29.	코로나19 입원병실 공조기(7,8호기)수리	10,892,750	자비	
42	'21. 2.22.	코로나19병동 의료진출입동선용 칸막이 설치공사	3,432,000	국비	4차
43	'21. 3. 8.	코로나19입원병실용 포터블음압기 필터교체	5,432,754	자비	
44	'21. 3.29.	42병동CCTV녹화기 공급실로 이전 설치	715,000	국비	4차
45	'21. 4.29.	코로나-19 입원병실 팬코일 필터 교체	1,365,000	자비	
46	'21. 8. 9.	코로나19선별진료소 차양막 설치공사	3,498,000	자비	
47	'21.11.26.	코로나19확진자 진료한 의료진용 이동식사위부스설치	7,590,000	자비	
48	'21.12. 9.	코로나19입원병실(3112,3113) 오수배관 관통작업	550,000	자비	
49	'22. 2. 9.	코로나19 선별 발열체크 관련 자동문 설치	5,940,000	자비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 지원금 미신청건 일부에 대하여, 코로나 전담 진료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판단하여 자비로 비용을 처리하였으며, 향후에는 사업지침에 의거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원신청을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지원 대상기간 동안 감염병전담병원 운영을 위하여 지출했거나 지출예정인 시설·장비 비용에 대하여는 의료원 재정에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국고 지원 신청을 했어야 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를 통해 국비지원 여부를 판별·결정 받았어야 했으므로, 마산의료원 자체 판단만으로 국비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상황 당시 마산의료원 ○○과에서 수행했던 구호물품, 보호구 장비 관련 지원신청 등의 업무가 가중되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사업을 진행했다는 의견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 성격상 정책 결정 사항이 아닌 계속·반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과 경과실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감독책임자보다는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원장은

- ① 「마산의료원 복무규정」 제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감염병전담병원 운영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급 ○○○(현 ○○○○), ○○○○급 ○○○(현 ○○과)과 실무책임자 ○○과 ○○○○급 ○○○**을 「마산의료원 직원경고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고·주의 요구

제 목 진료비 감면위원회 운영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이하 “마산의료원”이라 한다) ○○과에서는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진료비감면규정」에 따른 진료비감면위원회 운영 업무를 하고 있다.

2. 진료비 감면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진료비감면규정(이하 “진료비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조(목적)에 따르면 마산의료원이 진료를 수행하는데 있어 의료시혜사업 등 특수한 목적으로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을 때에 이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진료비감면규정」 제4조(진료비 감면 대상자 및 감면율) 및 제5조(진료비 감면위원회)에 따르면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규정(이하 “의료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이라 한다)』 제1조(목적)에 따르면 마산의료원에서 의료행위 및 의료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여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규정」 제3조(위원회) 및 4조(위원회의 기능)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의료분쟁의 조정 및 진료비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8조(조정대상 및 범위)에 따르면 조정대상은 의료원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자가 진료과오 및 기타의 이유로 진료비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위로보상 등을 요구하는 분쟁을 제기한 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진료비 감면의 목적 및 대상을 엄격히 구분하여 마산의료원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자가 진료과오 및 기타의 이유로 진료비의 납부를 거부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때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규정」에 따른 의료분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진료비를 감면하여야 하고, 특수목적 등의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진료비감면규정」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하여야 하며, 제 감면규정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진료비 등을 부당하게 감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2017. 9월부터 2022. 10월까지 마산의료원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자에 대해 대하여 [표 1]과 같이 「진료비감면규정」 제4조에 따른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판단하여 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에 의하여 감면을 하였으나, 「진료비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진료 부작용, 진료불만에 따른 진료비 납부 거부 등의 사유로 68건 38,906,810원의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한 사실이 있다.

[표 1] 진료 부작용 및 진료비 납부 거부자 등에 대한 진료비감면위원회 개최 현황

연번	심의일자	안건 제목	감면액(원)	심의방법	비고
계		68건	38,906,810		
1	'17. 9. 4.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1,107,620	"개최"	
2	'17. 9. 8.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547,820	"개최"	
3	'17. 9.11.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10,800	"서면"	
4	'17. 9.11.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14,060	"서면"	
5	'17. 9.26.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131,030	"개최"	
6	'17. 9.29.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27,180	"서면"	
7	'17.10.30.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278,260	"개최"	
8	'17.11. 1.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26,990	"서면"	
9	'17.11.13.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87,500	"개최"	
10	'17.12.14.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57,700	"서면"	
11	'18. 1.17.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8,600	"서면"	
12	'18. 1.25.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9,100	"서면"	
13	'18. 2. 7.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765,730	"개최"	
14	'18. 2.14.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22,500	"서면"	
15	'18. 2.14.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764,870	"개최"	
16	'18. 3. 8.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21,500	"서면"	
17	'18. 3.26.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117,500	"개최"	
18	'18. 4. 2.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719,830	"개최"	
19	'18. 4.18.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170,000	"서면"	
20	'18. 4.19.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104,180	"서면"	
21	'18. 5.11.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61,930	"서면"	
22	'18. 6. 7.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42,910	"서면"	
23	'18. 6.25.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47,700	"개최"	
24	'18. 7. 6.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335,260	"개최"	
25	'18. 8.10.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210,710	"개최"	
26	'18.10.15.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2,206,260	"개최"	
27	'18.11. 3.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449,790	"서면"	
28	'18.11.26.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235,910	"개최"	
29	'18.11.29.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26,110	"서면"	
30	'19. 1. 4.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49,830	"개최"	
31	'19. 1.30.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325,970	"개최"	
32	'19. 6.25.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11,100	"서면"	
33	'19. 9.23.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14,530	"서면"	
34	'19.10.21.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570,360	"개최"	
35	'19.10.28.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124,500	"서면"	
36	'19.11. 8.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20,100	"서면"	
37	'19.11.21.	○○○○ 환자의 입원진료비 감면	356,930	"개최"	
38	'19.11.30.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38,240	"서면"	
39	'19.12.18.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86,420	"서면"	
40	'19.12.19.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180,000	"개최"	

41	'20. 2. 5.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1,727,450	"개최"	
42	'20. 2.19.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270,340	"개최"	
43	'20. 2.25.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241,510	"개최"	
44	'20. 4.21.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25,400	"서면"	
45	'20. 6.11.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2,877,490	"개최"	
46	'21. 1.13.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26,600	"서면"	
47	'21. 3.24.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446,850	"개최"	
48	'21. 3.26.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30,570	"서면"	
49	'21. 4.13.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21,670	"서면"	
50	'21. 5.31.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387,340	"개최"	
51	'21. 6. 1.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41,830	"서면"	
52	'21. 6.23.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827,470	"개최"	
53	'21. 7. 5.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968,170	"개최"	
54	'21. 7.20.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1,987,320	"개최"	
55	'21. 7.28.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2,277,220	"개최"	
56	'21. 8.11.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5,654,690	"개최"	
57	'21. 8.18.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49,700	"서면"	
58	'21.10.28.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55,200	"서면"	
59	'22. 1.14.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42,320	"서면"	
60	'22. 3.24.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57,080	"서면"	
61	'22. 3.28.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7,119,190	"개최"	
62	'22. 4.19.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42,420	"서면"	
63	'22. 5. 3.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29,430	"서면"	
64	'22. 6.14.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70,300	"서면"	
65	'22. 7.15.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528,550	"개최"	
66	'22. 7.27.	○○○ 환자의 외래 진료비 감면	17,000	"서면"	
67	'22. 8.29.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507,470	"개최"	
68	'22.10.28.	○○○ 환자의 입원 진료비 감면	2,188,900	"개최"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3. 미수금 결손처리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기준)

「경상남도 마산의료원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90조(납입의 독촉) 및 제91조(불납한 경우의 처리)에 따르면 납입기한이 경과하여도 납입하지 아니하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는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 독촉장을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수 차례의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수입금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 또는 채정보증인의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여 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회계규정」 제92조(불납금의 결손처리) 제1항에 따르면 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인하여 징수 결정액에 대한 불납금을 결손처리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마산의료원에서 의료행위를 받은 자로부터 발생한 미수금(불납금)에 대하여 「회계규정」에 따른 절차 및 채권확보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 미수금 결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2023. 2. 8. 감사일 현재까지 진료비 채권 소멸 시효기간이 경과할 동안 독촉장만으로 납부를 독려하였을 뿐, 미수금 납부를 위한 지급명령, 압류, 재산상황 조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표 2]와 같이 규정에도 없는 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면을 심의·결정하고 이사회 의 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표 2] 미수금 결손 처분건에 대한 진료비감면위원회 개최 현황

연번	심의일자	안건 제목	결손처분액(원)	심의방법	비고
계			2,857,860		
1	'18.12.12.	2013년 미수금 결손 처분	492,910	"개최"	
2	'19.12 .6.	2014년 미수금 결손 처분	44,090	"개최"	
3	'21. 1.25.	2015년 미수금 결손 처분	114,280	"개최"	
4	'21.12. 9.	2016년 미수금 결손 처분	855,250	"개최"	
5	'22.12.13.	2017년 미수금 결손 처분	1,351,330	"개최"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경상남도 마산의료원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진료 부작용, 진료불만에 따른 진료비 납부 거부 등에 대하여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한 경위에 대하여,

진료 중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진료 과오 또는 기타의 이유로 진료비 과다 발생으로 인한 진료비 수납 거부에 대해 주치의에게 불만을 토로하면 주치의가 인정하는 부분에서 '진료비감면요청서'에 의거하여 진료비감면 위원회를 개최하고 의결사항에 대하여 환자(보호자)를 설득하여 감면을 진행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진료과오의 이유로 진료비의 납부를 거부할 때는 의료분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면·보상하여야 하고, 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외 또는 진료비 감면 규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기타의 이유는 진료비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감면한 사실은 「마산의료원 진료비감면규정」 및 「마산의료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규정」에 따른 감면 목적·대상·절차에 맞지 않아 감면 절차 등을 적의 이행하였다는 마산의료원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진료비 미수금에 대하여 지급명령, 압류, 재산상황 조사 등 채권확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규정에도 없는 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를 통해 미수금을 결손 처리한 경위에 대하여,

진료비 감면위원회 심의를 통해 감면을 심의·결정한 원인은 미수금을 결손처분하면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수입금이 소멸되므로 수입금의 결손 처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진료비감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사회에 상정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미수금을 결손처리 하기 전에 이행하여야 할 지급명령, 압류, 재산상황 조사 등 채권확보 등은 이행하지 아니한 채, 규정에도 없는 진료비감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미수금을 결손 처분한 사실은 절차의 부적정함뿐만 아니라, 업무에 대한 소홀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마산의료원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후 시·군에서 체납자의 재산조회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근 3년 동안 코로나 상황으로 가정방문이 불가하여 재산상황 조사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의견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업무 성격상 정책 결정 사항이 아닌 계속·반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과 경과실인 점을 비추어 볼 때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원장은

① 「마산의료원 진료비감면규정」 제4조를 위반하여 진료비를 부적정하게 감면하고, 「마산의료원 회계규정」 제91조를 위반하여 진료비 미수금에 대한 채권확보 등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급 ○○○과 실무 책임자 ○○과 ○○○○급 ○○○을 「마산의료원 직원경고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고·주의 요구 및 통보

제 목 직원 채용절차 준수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이하 “마산의료원”이라 한다) ○○과에서는 「마산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라 의사, 약사 등 직원의 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2019. 12. 16. 부터 2023. 2. 8. 감사일 현재까지 [표 1]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199명의 직원을 채용하였다.

[표 1] 마산의료원 채용 현황

[단위 : 명]

연번	채용 공고일	분 야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	최종 합격자	비 고
계			208	869	199	
1	2019. 12. 16.	의사직	1	0	0	
		약사직	1	0	0	
		보건직(물리치료사)	1	18	1	
		기능직(사무보조)	1	14	1	
2	2020. 1. 8.	기간제(병동 채혈사)	1	1	1	
3	2020. 2. 7.	운영지원직(간호사)	1	8	1	
		운영지원직(간호조무사)	1	8	1	
		운영지원직(임상병리사)	1	18	1	
		운영지원직(업무보조원)	2	4	2	보훈처 추천
		운영지원직(업무보조원)	1	7	1	장애인 특별채용

연번	채용 공고일	분 야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	최종 합격자	비 고
		운영지원직(장례식장조리원)	3	7	3	
		기간제(의무기록사)	1	4	1	
4	2020. 2. 8.	의사직	2	0	0	
		약사직	2	1	1	
5	2020. 6. 8.	약사직(약제과장)	1	4	1	
		보건직(임상병리사)	1	72	1	
		운영지원직(간호사)	1	13	1	
		운영지원직(응급실사무원)	3	34	3	
		운영지원직(방재원)	1	6	1	
		운영지원직(구내식당조리원)	1	5	1	
6	2020. 9. 2.	운영지원직(간호사)	2	9	2	
7	2020. 10. 8.	약사직	1	4	1	
		간호직(8급 신규간호사)	66	90	66	
8	2020. 12. 28.	기술직(8급 정보처리기사)	1	11	1	
		운영지원직(간호조무사)	2	15	2	
		운영지원직(병동도우미)	1	11	1	
		운영지원직(장례지도사)	1	8	1	
		운영지원직(방재원)	1	5	1	
		운영지원직(매점관리원)	1	0	0	보훈처 추천
		운영지원직(조리원)	1	11	1	
9	2021. 2. 5.	의사직(이비인후과)	1	1	1	
		약사직	1	2	1	
		보건직(영양사)	1	5	1	
		운영지원직(매점관리원)	1	16	1	
		기간제(약무보조)	1	14	1	
10	2021. 3. 31.	운영지원직(방사선사)	1	19	1	
		기간제(방사선사)	1	5	1	
		기간제(보건의료정보관리사)	1	12	1	
		기간제(임상병리사)	1	8	1	
11	2021. 6. 4.	운영지원직(간호사)	1	4	1	
		운영지원직(간호조무사)	2	28	2	

연번	채용 공고일	분 야	선발예정 인원	응시자	최종 합격자	비 고
		운영지원직(병동도우미)	1	7	1	
		운영지원직(조리원)	1	3	1	
		기간제(장례식장미화원)	3	11	3	
12	2021. 8. 3.	기간제(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4	7	4	
13	2021. 10. 12.	간호직(8급 신규간호사)	20	94	20	
14	2021. 11. 5.	기술직(8급 정보처리기사)	1	7	1	
		운영지원직(간호사)	1	6	1	
		운영지원직(방재원)	1	5	1	
		운영지원직(업무보조원)	1	34	1	
		운영지원직(조리원)	3	7	3	
15	2022. 1. 21.	운영지원직(방재원)	1	3	1	
		운영지원직(조리원)	3	9	3	
		운영지원직(병동도우미)	1	9	1	
		기간제(임상병리사)	1	5	1	
16	2022. 4. 22.	의사직(소화기내과)	1	0	0	
		의사직(호흡기내과)	1	0	0	
		의사직(감염내과)	1	0	0	
		운영지원직(사회복지사)	1	1	1	
		운영지원직(간호조무사)	2	17	2	
		운영지원직(조리원)	3	7	3	
17.	2022. 6. 30.	행정직(8급)	1	37	1	
		운영지원직(사회복지사)	1	1	1	
		운영지원직(방재시설관리원)	1	1	1	
		기간제(사회복지사)	1	2	1	
18	2022. 8. 12.	운영지원직(방재시설관리원)	2	6	2	
		운영지원직(조리원)	2	2	2	
		기간제(사회복지사)	2	6	2	
19	2022. 10. 17.	간호직(8급 신규간호사)	30	79	30	
20	2022. 10. 28.	기간제(방사선사)	1	1	1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2. 채용계획 사전협의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 ② 채용계획 수립 - 가. 채용계획 사전협의를 따르면 기관장은 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 인사규정」 제17조(신규 채용방법) 제5항에 따르면 직원을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채용 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 전반에 대해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직원의 채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채용공고 예정일 15일 전까지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2023. 2. 8. 감사일 현재까지 [표 2]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면서 2020. 1. 8. 기간제(병동 채혈사 1명) 채용은 경상남도와의 사전 협의를 하지 않거나 2021. 8. 3. 기간제(요양보호사 4명) 채용은 채용공고 당일에 경상남도와의 협의를 하는 등 사전협의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2] 채용공고 사전협의 기한 미준수 내역

연번	공고일자	사전 협의일	사전협의 기한 미준수 내역	비고
1	2020. 1. 8.	미협의	협의 안함	
2	2021. 8. 3.	2021. 8. 3.	0일(공고일에 협의 공문 발송)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3. 채용과정 공개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 ④ 시험의 방법 - 바. 채용과정 공개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 합격자 발표일까지 선발인원, 합격인원, 응시인원, 합격선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전형별로 1차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2023. 2. 8. 감사일 현재까지 [표 3]과 1차 합격자(5회) 및 최종 합격자(20회)를 채용공고에 개별통지로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채용공고 하였다.

[표 3] 채용결과 미공개 내역

연번	공고일자	1차 합격자 미공개	최종합격자 미공개	비고
1	2019. 12. 16.	○	○	
2	2020. 1. 8.	○	○	
3	2020. 2. 7.	○	○	
4	2020. 2. 8.	○	○	
5	2020. 6. 8.	○	○	
6	2020. 9. 2.	공개	○	
7	2020. 10. 8.	공개	○	
8	2020. 12. 28.	공개	○	
9	2021. 2. 5.	공개	○	
10	2021. 3. 31.	공개	○	
11	2021. 6. 4.	공개	○	
12	2021. 8. 3.	공개	○	
13	2021. 10. 12.	공개	○	
14	2021. 11. 5.	공개	○	
15	2021. 1. 21.	공개	○	
16	2022. 4. 22.	공개	○	
17	2022. 6. 30.	공개	○	
18	2022. 8. 12.	공개	○	
19	2022. 10. 17.	공개	○	
20	2022. 10. 28.	공개	○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4. 직원 임용기준 적용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 - ① 신규채용 - 가. 공개 경쟁시험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원 신규채용 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 - ① 신규채용 - 나. 경력경쟁시험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분야에 대하여는 우수 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경력경쟁시험으로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기준 또는 자격요건은 직위·직무특성을 감안하여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사전에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Ⅲ. 직원의 인사 - ① 신규채용 - 다. 채용요건·시험방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시험의 요건, 시험방법 등에 관하여는 직종·직위·직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되, 개별 채용별로 그 절차와 방법을 기관장 등이 달리 정하도록 할수 없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마산의료원 인사규정」 제6조(임용의 원칙) 제1항에 따르면 임용은 [별표2]의 자격기준에 의한 채용고시, 전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요건 등을 자체 인사규정으로 정하여야 하고, 인사규정으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자격요건을 공고해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표 4]와 같이 TOEIC 600점 이상, 종합병원 경력 3년 이상 등 자체 방침만으로 「마산의료원 인사규정」에 따른 임용기준에 없는 기준을 적용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채용기준에 과도한 제한을 두게 되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이 훼손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표 4] 임용기준 미준수 채용공고 내역

연번	공고일자	분 야	채용공고 자격요건 내용	인사규정 자격요건	비고
1	2019. 12. 16.	기능직8급(사무보조)	TOEIC 600점 이상	자격요건 없음	
2	2021. 11. 5.	운영지원직(간호사)	간호사 자격증소지자 종합병원 경력 3년 이상	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3	2022. 6. 30.	행정직 8급	TOEIC 600점 이상	자격요건 없음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5. 최종합격자 성범죄 등 범죄경력 조회 부적정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의료기관 포함)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5항에 따르면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 ㉠ 신규채용 - 마. 결격사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참고하여 내부규정의 임용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마산의료원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따르면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직원 채용을 진행하고 최종합격자를 선발한 경우 해당 합격자에 대하여 노인학대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2023. 2. 8. 감사일 현재까지 199명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의료인을 제외한 ○○명(○○직 ○, ○○직 ○, ○○○○직 ○○, ○○○ ○○) 직원에 대해서는 노인학대 및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있다.

6.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시험 진행

가.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Ⅲ. 직원의 인사 - ㉡ 시험의 방법 - 다. 시험위원 외부전문가 참여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시 채용규모, 심사기준의 구체성 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위원을 2분의 1이상 참여시켜 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마산의료원 인사규정」 제17조의5(합격기준)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면접시험위원 5인 이상(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으로 한다. 단 채용인원이 10명

이하일 경우 면접시험위원을 3인 이상(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한 면접시험 진행 시 면접시험 위원 중 외부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 면접시험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2023. 2. 8. 감사일 현재까지 [표 5]와 같이 2020. 1. 8. 공고한 기간제(○○ ○○○ 1명) 및 2021. 8. 3. 공고한 기간제(○○ ○○○ ○명)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하고 면접시험을 진행하여 마산의료원 채용절차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를 초래하였다.

[표 5] 내부위원만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한 내역

연번	공고일자	분 야	모집인원	면접위원 구성		비고
				내부위원	외부위원	
1	2020. 1. 8.	기간제 (○○○○○)	○명	○명 (○○○, ○○○)	없음	
2	2021. 8. 3.	기간제 (○○○○○)	○명	○명 (○○○, ○○○, ○○○)	없음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관련규정 숙지 및 업무처리 미흡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도 채용계획 사전협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메일을 통하여 공고일 4일전에 경상남도과 협의를 하였으며, 채용과정 공개 부적정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관리차원에서 개별통지를 하였고, 직원 임용기준 적용 부적정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유치를 위해 내부 논의 후 경상남도과 협의를 통하여 자격 요건을 정하여 공고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직원의 채용은 그 과정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에도 직원 채용 계획 수립 후 경상남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거나 공고 당일 협의를 진행하였고, 전형별 합격자를 마산의료원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았으며, 자체 규정에 없는 기준을 공고하여 자격제한을 과도하게 하였고, 최종 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결격사유인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내부 면접위원만으로 면접시험을 진행하는 등 과실여부가 가뻔다고 볼수 없다.

다만 이 사안은 실무자가 경상남도 대표 공공의료기관으로 2020. 1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코로나19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인력 공급 위해 3년간 20회에 걸쳐 199명의 직원을 채용하는 등 노력을 하였고 업무 성격상 정책 결정 사항이 아닌 계속·반복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과 경과실인 점을 비추어 볼 때 감독책임자보다는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원장은

- 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관련 규정 및 「마산의료원 인사규정」 제17조 등을 위반하여 직원 채용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 ○○○장 ○○○(○○○ ○급)과 실무책임자 ○○○장 ○○○(○○○ ○급), ○○과 ○○○장 ○○○(○○○ ○급)**을 「마산의료원 직원경고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 ② 최종합격자에 대한 임용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통보**)
- ③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별표2] 직원임용기준 및 방법

(개정 88. 4.12, 98. 5.11, 2020.8.1)

1. 의료직 (의사, 약사)

구 분	임 용 기 준
의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과 전문의 자격소지자 · 보조과 전문의 자격소지자 · 의사면허소지자로서 의료원 전형에 합격한 자
약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사 면허 소지자로서 의료원 전형에 합격한 자

2. 일반직 및 의료직중 간호직 (개정 88.4.12., 98.5.11., 2020.8.1., 2021.3.9.)

구분	임 용 기 준
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4급 상당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로서 본원 전형에 합격한 자 · 본원과 지방의료원 3급 직에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종의 면허소지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5급 상당 이상의 직에서 근무한 자로서 본원 전형에 합격한 자 · 종합병원중의 유사한 직급에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 본원과 지방의료원 4급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종의 면허소지자로서 본원 4급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 본원과 지방의료원 5급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5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종의 면허소지자로서 본원 5급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 본원과 지방의료원 6급 직원으로 3년 이상 근속한 자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종의 면허소지자로서 본원 6급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 본원과 지방의료원 7급 직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
7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직종의 면허소지자로서 본원 7급 직원채용고시 및 전형에 합격한 자 · 본원과 지방의료원 8급 직원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자
8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종의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원 전형에 합격한 자 · 본원 전형에 합격한 자

3. 운영지원직 (신설2020.8.1)

구 분	임 용 기 준
의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직종의 면허 및 자격증 소지자로서 본원 전형에 합격한 자 · 본원 전형에 합격한 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시정 요구

제 목 관용차량 이용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이하 ‘마산의료원’이라 함) ○○과에서는 「관용차량관리규정」에 따라 [표 1]과 같이 의전용 관용차량을 관리·운용하고 있다.

[표 1] 의전용 관용차량 관리현황

명칭	차종	연식	차형	배정대상 (운전원)	차량번호
1호차	그랜저HG	2015	승용(대형)	원장	○○○○○○○○

2. 관계법령(판단기준)

「관용차량관리규정」 제5조(배차신청) 및 제6조(배차승인)에 따르면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하고, 차량 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2023. 1. 9.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 제20조³⁾(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따르면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3)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제정 2022.5.18.] 시행(2022.5.19.) 됨에 따라 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의 사항이 공직유관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법률로써 일괄 적용됨

의료원 소유의 재산과 의료원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관용차량관리규정」에 따라 배차신청 및 승인 하여야 하고, 임직원은 관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2020. 4. 4.부터 2021. 12. 28.까지 승용차량⁴⁾(대형)에 대해서 차량배차 신청(승인)을 하지 않고 주말 및 공휴일에 차량을 사용하였고, 차량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임직원은 [표 2]와 같이 주말 및 공휴일에 총 34건의 관용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고, 총 59건의 하이패스를 사용하였으며, 의료원의 주유 카드와 하이패스 카드를 이용하여 589,710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

[표 2] 주말(공휴일) 관용차량 및 하이패스 사용내역

(단위 : 건, 원, km)

번호	카드번호	일정		행선지	관용차량			하이패스		합계 (a+b)
		일자	요일		거리	유가 ⁵⁾	금액 ⁶⁾ (a)	건	금액(b)	
계	34건				3,780	1,492	412,510	59	177,200	589,710
1	○○○○○○○○ ○○○○○○○○	'○○.○○.○○	토요일	○○/○○	120	1,324	11,950	1	1,300	13,250
2	○○○○○○○○ ○○○○○○○○	'○○.○○.○○	일요일	○○/○○	40	1,324	3,980	1	2,800	6,780
3	○○○○○○○○ ○○○○○○○○	'○○.○○.○○	토요일	○○/○○	120	1,324	11,950	1	1,300	13,250
4	○○○○○○○○ ○○○○○○○○	'○○.○○.○○	일요일	○○/○○	130	1,323	12,930	2	4,200	17,130
5	○○○○○○○○ ○○○○○○○○	'○○.○○.○○	토요일	○○/○○	210	1,323	20,890	3	14,600	35,490

4) 그랜저 HG(1호차, 2015년식, 휘발유 차량)

번호	카드번호	일정		행선지	관용차량			하이패스		합계 (a+b)
		일자	요일		거리	유가 ⁵⁾	금액 ⁶⁾ (a)	건	금액(b)	
6	○○○○○○○○ ○○○○○○○○	'00. 0. 0.	일요일	○○○○	40	1,360	4,090	1	2,500	6,590
7	○○○○○○○○ ○○○○○○○○	'00. 0. 0.	일요일	○○/○○	100	1,360	10,230	1	6,000	16,230
8	○○○○○○○○ ○○○○○○○○	'00. 0. 0.	토요일	○○/○○	120	1,353	12,210	2	2,900	15,110
9	○○○○○○○○ ○○○○○○○○	'00. 0. 0.	일요일	○○/○○	120	1,333	12,030	1	2,000	14,030
10	○○○○○○○○ ○○○○○○○○	'00. 0. 0.	토요일	○○/○○	210	1,333	21,050	3	13,500	34,550
11	○○○○○○○○ ○○○○○○○○	'00. 0. 0.	토요일	○○/○○	160	1,333	16,040	1	10,100	26,140
12	○○○○○○○○ ○○○○○○○○	'00. 0. 0.	일요일	○○/○○	120	1,368	12,340	1	1,600	13,940
13	○○○○○○○○ ○○○○○○○○	'00. 0. 0.	토요일	○○/○○	150	1,368	15,430	3	9,600	25,030
14	○○○○○○○○ ○○○○○○○○	'00. 0. 0.	토요일	○○/○○	220	1,368	22,630	5	20,700	43,330
15	○○○○○○○○ ○○○○○○○○	'00. 0. 0.	일요일	○○/○○	100	1,368	10,290	2	6,200	16,490
16	○○○○○○○○ ○○○○○○○○	'00. 0. 0.	토요일	○○/○○	120	1,442	13,010	1	1,600	14,610
17	○○○○○○○○ ○○○○○○○○	'00. 0. 0.	토요일	○○/○○	300	1,463	33,000	5	17,000	50,000
18	○○○○○○○○ ○○○○○○○○	'00. 0. 0.	토요일	○○/○○	120	1,463	13,200	2	3,200	16,400
19	○○○○○○○○ ○○○○○○○○	'00. 0. 0.	토요일	○○/○○	300	1,535	34,620	4	13,500	48,120
20	○○○○○○○○ ○○○○○○○○	'00. 0. 0.	어린이날	○○/○○	120	1,542	13,910	2	3,800	17,710
21	○○○○○○○○ ○○○○○○○○	'00. 0. 0.	토요일	○○/○○	120	1,542	13,910	1	1,300	15,210
22	○○○○○○○○ ○○○○○○○○	'00. 0. 0.	석가탄신일	○○○○	40	1,542	4,640	1	2,500	7,140
23	○○○○○○○○ ○○○○○○○○	'00. 0. 0.	토요일	○○○○	40	1,542	4,640	1	2,500	7,140
24	○○○○○○○○ ○○○○○○○○	'00. 0. 0.	토요일	○○/○○	120	1,630	14,710	1	1,300	16,010
25	○○○○○○○○ ○○○○○○○○	'00. 0. 0.	토요일	○○○○	40	1,646	4,950	1	2,500	7,450
26	○○○○○○○○ ○○○○○○○○	'00. 0. 0.	추석	○○○○	40	1,643	4,940	1	2,500	7,440
27	○○○○○○○○ ○○○○○○○○	'00. 0. 0.	추석	○○/○○	40	1,643	4,940	2	3,500	8,440
28	○○○○○○○○ ○○○○○○○○	'00. 0. 0.	토요일	○○/○○	40	1,712	5,150	2	5,300	10,450
29	○○○○○○○○ ○○○○○○○○	'00. 0. 0.	토요일	○○/○○	120	1,712	15,450	1	2,100	17,550
30	○○○○○○○○ ○○○○○○○○	'00. 0. 0.	토요일	○○○○	40	1,737	5,220	1	2,500	7,720

번호	카드번호	일정		행선지	관용차량			하이패스		합계 (a+b)
		일자	요일		거리	유가 ⁵⁾	금액 ⁶⁾ (a)	건	금액(b)	
31	○○○○○○○○ ○○○○○○○○	'○○.○○.○○	일요일	○○○○	40	1,737	5,220	1	2,500	7,720
32	○○○○○○○○ ○○○○○○○○	'○○.○○.○○	토요일	○○/○○	100	1,737	13,060	1	4,300	17,360
33	○○○○○○○○ ○○○○○○○○	'○○.○○.○○	토요일	○○/○○	40	1,646	4,950	2	3,500	8,450
34	○○○○○○○○ ○○○○○○○○	'○○.○○.○○	토요일	○○○○	40	1,646	4,950	1	2,500	7,450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관계기관 의견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차량 운전원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1호차 차량의 관리를 기관장이 하고 있어 관용차량의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휴일에도 본원과 대학병원에서 여러 대학 교수들과의 업무협조를 위해 만나기도 하고 긴급하게 자택에서 마산의료원으로 오기도 하는 등 부득이하게 주말에 관용차량을 이용한 적도 있으며, 향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주말 이동에 대해서는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겠으며 부득이한 경우 출장신청 등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원장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임직원 행동강령」(2023. 1. 9.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 제20조 등을 위반하여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임직원에게 대해서 589,710원을 회수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 준수와 직무 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시정)

5)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net.co.kr) 월간국내유가동향 기준

6) 금액기준* : 주행거리(km) × 유가 ÷ 연비**(13.3)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라. (1) 연료비 지급기준을 적용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를 적용하여 휘발유 차량: 13.30(km/L)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고·주의 요구

제 목 성희롱 피해자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처리 부적정
소 관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이하 ‘마산의료원’이라 함) ○○과에서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희롱 발생 신고 건에 대해 성희롱 재발 방지 및 2차 피해의 예방과 처리를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성희롱 사건 발생시 조치)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이하 ‘성희롱 예방지침’이라 함) 제4조(기관장의 책무)에 따르면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관장은 재발방지대책을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및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성희롱 예방지침」 제19조(위원의 회피)제5호에 따르면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조사 기간 또는 조사 결과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성희롱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도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20○○. ○. ○. ○○부 소속직원으로부터 직원내 성희롱 신고를 접수하고 20○○. ○. ○.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와 경상남도⁷⁾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 ○. ○ 감사일 현재까지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 ○. ○. [표]와 같이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⁸⁾가 ○○부 소속 임에도 불구하고 ○○○ 등 3명을 ○○부 소속 직원으로 임명하는 등 위원 회피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7) 재발방지대책 제출 시 해당 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함

8) 피해자: ○○○(○○○, ○○○○직종, ○○○○ ○○○○○, ○○년생) / 가해자: ○○○(○○○, ○○○○○, ○○○○○, ○○○○, ○○년생)

[표] 고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현황

구분	기 존			변 경		
	소속	성명	비고	소속	성명	비고
내부 위원	○○○	○○○		좌	동	
	○○○	○○○	○○○○			
	○○○	○○○				
	○○○○	○○○				
	○○○○	○○○	○○○, ○○○○			
	○○○○	○○○		○○○○	○○○	○○○, ○○○○○
외부 위원	-	○○○		좌	동	
	-	○○○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또한 피해자는 마산의료원 측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자 (사)○○○ ○○○○○○회의 고충상담⁹⁾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 요청을 호소하였고,

피해자는 병가, 연차, 특별휴가 등의 사유로 28일을 출근하지 않다 마침내 20○○. ○. ○. 개인사정(질병)으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를 결정하는 등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부적절하게 처리 하였다.

관계기관 의견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감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수용하면서 관련 사건의 처리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처음 겪는 고충사건으로 해당 직원의 업무 숙지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재발방지대책이 수립되지 않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고충처리심의위원회는 ○○○○의 요청으로 ○○ 대표 위원으로 구성되어 관련 지침으로 남녀 성비 비율 및 내·외부 위원의 구성 비율 맞추고 대부분의 여성이 ○○○ 소속인 병원 특성 상 ○○○ 직원을 제외하고 구성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사)○○○○○○○○○○회-20○○-○○호(20○○.○.○.)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 요청 건」

그리고 피해자의 근무처 이동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기존에 다른 층에서 근무해 동선이 분리 되어 있었고, 안내위주의 업무를 위해 추가로 근무지를 이동하였으며, 앞으로는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간에 서로 배려하며 격려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원장은

-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성희롱 피해자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피해자의 보호 조치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급 ○○○에게 「직원경고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준수와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경고·주의 요구

제 목 물품구매 단가계약 체결 미이행

소 관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과)

조 치 기 관 경상남도마산의료원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경상남도마산의료원(이하 “마산의료원”이라고 한다)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 의뢰 건에 대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계약사무의 처리) 제1항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단가계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단가계약)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구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단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찰 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 계약수량 및 이행기간 등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 이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나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물품계약의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5천만 원 이하인 물품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I.예산집행 10대 원칙, ⑨ 유사·중복사업의 통합발주 노력”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장은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 또는 제조·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물품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고 단가계약을 통해 일괄 구매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예상될 경우 이를 시기적으로 나누어 구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물품을 일괄하여 구매할 경우 추정가격이 2천 만원을 초과한다면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혹은 입찰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마산의료원 ○○과에서는 2017. 7. 8.부터 2023. 2. 8. 감사일 현재까지 물품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표]와 같이 매일 계속하여 “○○○○ ○○”을 구매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한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괄하여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¹⁰⁾ 혹은 입찰을 통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부적정하게

10)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6절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를 받을

월별로 나누어 “○○ ○○”에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총 275,925천 원을 지급하였다.

[표] 물품구매 단가계약 체결 미이행 내역

(단위 : 천 원)

회계연도	지급내용	지급업체	지급액	계약방법	적정 계약방법	(최대) 절감가능액
합계	58건		275,925			33,788
2017	○○○○ ○○(7건)	○○ ○○	32,768	수의계약 (월별분할)	2인견적 수의계약	3,932
2018	○○○○ ○○(7건)	○○ ○○	30,089	수의계약 (월별분할)	2인견적 수의계약	3,611
2019	○○○○ ○○(12건)	○○ ○○	89,732	수의계약 (월별분할)	입찰	11,445
2020	○○○○ ○○(11건)	○○ ○○	37,668	수의계약 (월별분할)	2인견적 수의계약	4,520
2021	○○○○ ○○(11건)	○○ ○○	36,039	수의계약 (월별분할)	2인견적 수의계약	4,325
2022	○○○○ ○○(10건)	○○ ○○	49,629	수의계약 (월별분할)	2인견적 수의계약	5,955

* 물품구매 단가계약 체결 미이행 세부내역 별첨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상기 [표]와 같이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혹은 입찰을 통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최대 33,788천 원의 예산을 절감¹¹⁾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다수 업체에 공정한 계약 참여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 있는 수의계약”에 따르면 마산의료원에서 월별로 계속하여 구매한 “장례식장 과일”은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에 해당하여 연간 단가계약 체결 시 2천만원을 초과하고 5천만원 이하인 범위 내에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진행하여야 함

1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에 따르면 “2인 견적에 의한 물품 수의계약”의 낙찰하한가는 88%로 명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면 “물품 입찰”의 낙찰하한가는 87.245%*로 도출되므로 최대 예산 절감가능액을 낙찰하한가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제2절 “세부 평가기준” 및 제4절 “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 시 적격심사 종합평점의 하한 점수인 85점을 기준으로 하고, 물품 납품이행능력이 만점인 30점이고 입찰가격이 70점 만점에 마지노선 점수인 55점이 나와야한다고 가정하면, 입찰가격의 평가기준 평점산식인 “7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에서 역산할 경우 입찰가격 비율이 87.245%가 되어야 함

관계기관 의견

경상남도마산의료원에서는 물품구매 단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월별로 나누어 수의계약을 한 이유를 ○○○○ ○○ ○○은 가격 변동폭이 심하여 일정 가격으로 납품이 어렵고, 입찰 등을 통한 단가계약 체결시 각 품목당 가격이 측정되기 때문에 물가가 변동시 저급 제품의 납품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6년간 ○○ ○○와 지속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이유는 ○○의 ○에 따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할 여지가 있어 그 경우 반품이 원활하여야 하고 ○○○ 확보 차원에서 즉각적인 납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상 인접한 업체와 거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결제 당시 시세 기준으로 가격을 결정하여 월별 계약을 진행하였으므로 낙찰하한가를 대입 방식으로 적용한 사항은 오류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 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라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및 조정이 가능하고 단가 조정 및 품질검사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단가계약 공고 시 명시함으로써 해소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 ○○의 ○○○ 확보와 민원 발생 시 반품의 원활함 때문에 위치상 인접한 업체인 ○○ ○○에 지속적으로 거래하였다는 의견이 특정 업체에만 6년간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특혜를 제공한 결과를 초래하였고 타 업체의 계약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는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월별 분할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단가계약으로 체결하였다면 낙찰하한가를 적용하여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 가능하였다는 점 역시 변함없는 사실이다.

다만 이 사안은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대한 경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실무 책임자 및 감독책임자의 경우 지도·감독이 일부 미흡했으나 소관 담당 및 부서의 여러 업무를 총괄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무담당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원장은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물품 구매 단가계약 체결을 미이행한 당시 실무담당자 ○○과 ○○○○급 ○○○, ○○과 ○○○○급 ○○○을 「경상남도마산의료원 직원경고처분에관한규정」 제1호에 따라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경고)

②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별첨]

물품구매 단가계약 체결 미이행 내역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지급내용	지급업체	계약일자	지급액	총지급액	연간 단가계약 시 최대 절감가능액
2017	2017. 6월 ○○○○ ○○	○○ ○○	2017. 6. 30.	6,627	32,768	3,932
	2017. 7월 ○○○○ ○○	○○ ○○	2017. 7. 31.	4,354		
	2017. 8월 ○○○○ ○○	○○ ○○	2017. 8. 31.	6,219		
	2017. 9월 ○○○○ ○○	○○ ○○	2017. 9. 30.	4,868		
	2017. 10월 ○○○○ ○○	○○ ○○	2017. 10. 31.	4,078		
	2017. 11월 ○○○○ ○○	○○ ○○	2017. 11. 30.	3,137		
	2017. 12월 ○○○○ ○○	○○ ○○	2017. 12. 31.	3,485		
2018	2018. 01월 ○○○○ ○○	○○ ○○	2018. 1. 31.	5,672	30,089	3,611
	2018. 02월 ○○○○ ○○	○○ ○○	2018. 2. 28.	4,116		
	2018. 03월 ○○○○ ○○	○○ ○○	2018. 3. 31.	5,628		
	2018. 04월 ○○○○ ○○	○○ ○○	2018. 4. 30.	3,845		
	2018. 05월 ○○○○ ○○	○○ ○○	2018. 5. 31.	4,462		
	2018. 06월 ○○○○ ○○	○○ ○○	2018. 6. 30.	4,007		
	2018. 07월 ○○○○ ○○	○○ ○○	2018. 7. 31.	2,359		
2019	1월 ○○○○ ○○	○○ ○○	2019. 1. 31.	8,235	89,732	11,445
	○○○○ ○○(2월)	○○ ○○	2019. 2. 28.	7,973		
	○○○○ ○○(3월)	○○ ○○	2019. 3. 31.	6,841		
	○○○○ ○○(4월)	○○ ○○	2019. 4. 30.	7,431		
	○○○○ ○○(5월)	○○ ○○	2019. 5. 31.	5,639		
	○○○○ ○○(6월)	○○ ○○	2019. 6. 30.	7,968		
	○○○○ ○○(7월)	○○ ○○	2019. 7. 31.	5,890		
	○○○○ ○○(8월)	○○ ○○	2019. 8. 31.	9,437		
	○○○○ ○○(9월)	○○ ○○	2019. 9. 30.	5,445		
	○○○○ ○○(10월)	○○ ○○	2019. 10. 31.	7,837		
	○○○○ ○○(11월)	○○ ○○	2019. 11. 30.	9,027		
	○○○○ ○○(12월)	○○ ○○	2019. 12. 31.	8,009		
2020	○○○○ ○○(1월)	○○ ○○	2020. 1. 31.	6,630	37,668	4,520
	○○○○ ○○(2월)	○○ ○○	2020. 2. 29.	5,148		
	○○○○ ○○(3월)	○○ ○○	2020. 3. 31.	1,088		
	○○○○ ○○(4월)	○○ ○○	2020. 4. 30.	2,094		
	○○○○ ○○(5월)	○○ ○○	2020. 5. 31.	3,289		
	○○○○ ○○(6월)	○○ ○○	2020. 6. 30.	2,086		
	○○○○ ○○(7월)	○○ ○○	2020. 7. 31.	4,223		
	○○○○ ○○(8월)	○○ ○○	2020. 8. 31.	3,561		
	○○○○ ○○(9월)	○○ ○○	2020. 9. 29.	2,643		
	○○○○ ○○(10월)	○○ ○○	2020. 10. 31.	3,492		
	○○○○ ○○(11월)	○○ ○○	2020. 11. 30.	3,414		

회계 연도	지급내용	지급업체	계약일자	지급액	총지급액	연간 단기계약 시 최대 절감가능액
2021	2월 ○○○○ ○○	○○ ○○	2021. 2. 28.	1,655	36,039	4,325
	3월 ○○○○ ○○	○○ ○○	2021. 3. 31.	2,908		
	4월 ○○○○ ○○	○○ ○○	2021. 4. 30.	2,775		
	5월 ○○○○ ○○	○○ ○○	2021. 5. 31.	4,631		
	6월 ○○○○ ○○	○○ ○○	2021. 6. 30.	2,881		
	7월 ○○○○ ○○	○○ ○○	2021. 7. 30.	2,893		
	8월 ○○○○ ○○	○○ ○○	2021. 8. 31.	2,871		
	9월 ○○○○ ○○	○○ ○○	2021. 9. 30.	3,265		
	10월 ○○○○ ○○	○○ ○○	2021. 10. 29.	4,178		
	11월 ○○○○ ○○	○○ ○○	2021. 11. 30.	4,408		
	12월 ○○○○ ○○	○○ ○○	2021. 12. 31.	3,574		
2022	1월 ○○○○ ○○	○○ ○○	2022. 1. 31.	4,446	49,629	5,955
	2월 ○○○○ ○○	○○ ○○	2022. 2. 28.	3,159		
	3월 ○○○○ ○○	○○ ○○	2022. 3. 31.	6,759		
	4월 ○○○○ ○○	○○ ○○	2022. 4. 30.	6,586		
	5월 ○○○○ ○○	○○ ○○	2022. 5. 31.	5,169		
	6월 ○○○○ ○○	○○ ○○	2022. 6. 30.	3,632		
	7월 ○○○○ ○○	○○ ○○	2022. 7. 31.	3,821		
	8월 ○○○○ ○○	○○ ○○	2022. 8. 31.	4,419		
	9월 ○○○○ ○○	○○ ○○	2022. 9. 30.	5,328		
	10월 ○○○○ ○○	○○ ○○	2022. 10. 31.	6,310		

[출처 : 마산의료원 제출자료 재구성]